

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
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
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병운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○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
나.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,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
다.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, 연구개발 및 사업화, 국제협력, 재정지원, 사무의 위탁 등(안 제7조 ~ 안 제12조)

라. 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(안 제13조 ~ 안 제15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안배경

-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고는 있으나,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한계가 있음
 - 정보통신기술(ICT²⁾, Information & Communication Technology)은 정보기술(Information Technology, IT)과 통신기술(Communication Technology, CT)의 합성어로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, 생산, 가공, 보존, 전달,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뜻함
- 본 제정 조례안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융합을 지원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전문인력 양성, 연구개발 지원, 사업화 지원, 국제협력 지원 등을 규정하여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북도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본칙 1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**안 제2조**는 정의 규정으로,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의 ‘정보통신’, ‘정보통신산업’에 대한 정의 및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의 ‘정보통신융합’의 정의 규정을 준용함

2) 1997년 영국의 데니스 스티븐슨(Dennis Stevenson)의 보고서(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UK Schools: An Independent Inquiry)와 2000년 잉글랜드, 웨일스, 북아일랜드의 개정된 커리큘럼(National Curriculum)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명해짐

-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, 본 조례가 자치조례인 만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
-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,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
 - 관련 실태조사와 추진실적 평가, 평가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함
-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전문인력양성, 연구개발지원, 사업화지원, 국제협력지원,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사업이 전문적·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
-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정보통신산업 육성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 - 특히,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안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므로 충북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함
- (타당성)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의 구체화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의 강화 등은 그 내용이 적절하고, 사업 시행을 위한 타당성은 충분함
-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, 관련 법규에 따라 입법 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